

대회관리운영규정

사단
법인

대한철인3종협회

제정 2017. 1. 21.

개정 2018. 1. 27.

제1조(목적) ① 전국 규모 국내대회의 균형과 적정수를 유지하고 엘리트 대회 및 생활 체육대회를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둔다.

② 대회의 가중 중요한 요소인 안전에 최우선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한다.

③ 대회의 효율적인 관리로 내실화하고 무분별한 대회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국내 전국 대회 활성화를 통한 시도 협회의 자립도를 높인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내규는 대한철인3종협회(이하 “본 협회”라 한다) 정 가맹된 시도 협회가 주최·주관하는 대회로서 전국의 등록선수(이하 “엘리트”라 한다)와 체육동호인(이하 “동호인”이라 한다)을 그 참가대상으로 하는 대회에 대해 적용한다. 단 엘리트 대회는 정관 4조2항에 따라 대한 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회로 한다.

제3조(운영방침) ① 전국대회의 위상강화와 시도 협회간 경쟁을 통한 대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대회 운영평가를 아래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.

1. 기존 전국대회와 신규 신청대회는 운영평가를 통해 차기년도에 대회 승인 및 승강 적용한다.

2. 전국 규모 대회 등급은 시도협회가 연간 운영할 수 있는 적정 대회 수, 소요예산 확보, 경기력 향상 및 동호인 저변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을 기준으로 적용한다.

제4조(위원회) ① 승인된 전국규모 대회는 매년 대회 대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평가를 받는다.

② 대회 위원회는 대회 평가를 위한 위원회 산하에 전문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 있으며, 평가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평가계획의 수립
2. 평가지표의 선정 및 배점 기준의 설정
3. 대회 운영 종합평가 및 보고

④ 평가의 결과는 S(최우수), A(우수), B(미흡)의 3단계로 구분하며 그 배점은 S 90점 이상, A 70점 이상, B 70점 이하로 한다.

⑥ 평가결과 B등급은 전국대회 명칭(“전국”) 사용을 불허한다.

제5조(대회 주최, 주관 및 후원) ① 전국 대회의 주최는 본 협회 정관 4조2항에 따라 본 협회에서 주최한다.

② 본 협회 주최 전국대회 엘리트 대회에서 시도 협회는 공동 주관 또는 주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.

③ 시도협회 주최 전국 대회로 승인된 동호인 대회에 대해서 본 협회의 후원을 사용할 수 있다.

제6조(등급) ① 본 협회 대회는 엘리트 대회, 동호인대회를 구분하여 주최, 주관, 후원에 따라서 대회 등급을 달리한다.

② 전국 대회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. (2018년 개정)

1. 본 협회가 주최하는 국제대회 및 본 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대회는 KTF 1급이며, 본 협회가 후원하는 시도협회 주최 대회는 KTF1급, KTF2급으로 나눈다.

③ 동호인대회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.

1. 본 협회가 주최, 주관하는 국제대회 및 본 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대회는 KTF 1급이며, 본 협회에서 후원하는 시도협회 주최 대회는 KTF1급, KTF2급, KTF3급으로 나눈다.

2. 본 협회가 후원하는 시도협회 주최 동호인 대회의 KTF1급과 KTF2급은 본 협회 승인 규정에 따라서 전국대회로 개최할 수 있다.

3. 대회 종목은 표준거리와 장거리로 구분하여 등급을 나눈다.

제7조(승인) ① 본 협회 주최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와 본 협회 후원 전국 대회 승인은 별표 1 기준을 충족한 대회에 대해서만 승인해 준다.

② 전국대회 승인 조건은 대회 예산 및 참가 규모에 따른다.

③ 본 협회 후원 전국대회 승인은 동호인 대회에만 해당되며, 대회 승인에 따른 대회 등급은 평가 기준을 거쳐 전국대회(명칭 “전국”) 승인한다.

제8조(승인료) ① 본 협회 주최, 주관, 후원하는 모든 대회는 대회 승인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는 1,000만원-2,000만원의 승인료를 별표 2에 준하여 승인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본 협회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 및 본 협회에서 후원하는 대회 300만원-200만원의 승인료를 별표 2에 준하여 승인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④ 승인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시도협회 대회도 100만원을 납부하여야 본 협회 홈페이지(www.triathlon.or.kr)에서 참가자 모집을 할 수 있다.

제9조(대회 승인 취소) ① 대회 운영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.

② 승인된 전국규모 대회 중 이 내규를 위반하거나 선수(성)폭력, 공공유용,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본 협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협회에서 주최, 또는 주관하는 대회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10조(경비부담) ① 평가위원회의 현장평가에 필요한 경비는 본 협회 규정에 따라 본 협회에서 지급한다.

② 대회 기술 감독 및 주심 파견에 필요한 수당은 본 협회에서 지급한다.

제11조(청렴) ① 현장평가에 참가하는 자는 대회 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2조(KTF시리즈 적립금) KTF시리즈대회 성적 및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 25명의 선수에 대한 국내외대회 출전 지원금지원을 위해 KTF시리즈대회당 300만원을 적립한다.(2018년 개정)

부 칙(2017. 1. 21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1. 27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
별표1.

대회 등급 기준표

엘리트 대회 등급

KTF 1급	
대회유형	대회 사례
국제대회	올림픽, 세계선수권, 아시안게임 국제종합대회, ITU 대회, ASTC대회 등
본 협회 주최대회	전국체전, 해양스포츠대축전, 정부명칭 대회, 기타 전국대회
시도협회 주관 대회	생활체육대회와 이원화 대회승인, 평가등급 S

KTF 2급	
시도협회 주최 대회	대회승인, 평가등급 A

생활체육 대회 등급

대회 코스		KTF 1급	KTF 2급	KTF 3급
표준거리 O2코스	예산	5,000만원 이상	4,000만원 이상	제한 없음
	참가규모	500명 이상	300명 이상	100명 이상
	평가	평가 S	평가 A	평가 B 자체평가보고서
풀코스 (장거리)	예산	20,000만원 이상	6,000만원 이상	2,000 만원 이상
	참가규모	500명 이상	300명 이상	300명 이하
	평가	평가 S	평가 A	평가 B 자체평가보고서

별표 2

대회 승인료 기준표

대회 승인료

구분		승인료(만원)	비 고
국제대회 WTC, ITU (IM/70.3/O2)	<u>KTF 1급</u> <u>(시리즈)</u>	<u>5,000 이상</u>	대회 예산 및 승인등급에 따른 차등 지원
국제대회 WTC, ITU, ASTC (하프/O2/표준거리)	<u>KTF 1급</u>	<u>3,000 이상</u>	
전국대회 (엘리트, 생활체육)	<u>KTF 1급</u>	<u>1,000 이상</u>	
전국대회 (생활체육)	<u>KTF 1급</u>	<u>1,000 이상</u> <u>300 이상</u>	
	<u>KTF 2급</u>	<u>200 이상</u>	
	<u>KTF 3급</u>	<u>100 이상</u>	
듀애슬론, 아쿠아슬론		없음	홈페이지 사용료

※ 승인료의 50%는 지방협회의 발전지원금으로 지원한다.